

議案番號	第168號	議 決 事 項	위안 가결
議決年月日	1995. 4. 7. (第 32 回)		

固城郡民의 날條例(案)

提出者	固城郡守
提出年月日	1995. 3. 29.

고성군민의날조례(안)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1995. 3. 27.

제출자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고성군의 역사깊은 날을 군민의날로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체육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화합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10월 1일은 고성군이 1읍13면이 확정된 날이며 문화의 달과 풍요로운 결실의 달로서 이날을 군민의날로 함(안 제2조).
- 다. 군민의날 기념행사로 체육·문화 및 민속놀이등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·운영도록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설문조사 실시('94. 9. 16)
- 군민의날 제정 공청회 개최('94. 11. 23)

고성군민의날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민의날) 매년 10월 1일을 「고성군민의날」로 정한다.

제3조(기념행사) ①군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·체육 및 민속놀이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